



## 【검토보고서】

2016. 9. 30(금)  
제 273 회 임시회

#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주시의회**  
Yangju City Council

【전문위원 김영헌】

#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경과

- 제안자 : 양주시장(상하수과)
- 제출일 : 2016년 9월 12일
- 검토일 : 2016년 9월 13일

### 2. 제안이유

-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 관련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민들의 급수공사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시민들의 수도물 공급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급수공사의 설계수수료,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및 준공검사 수수료 인하 (안 제35조)
  - 급수관구경 40mm미만 : 당초 10,000원 → 변경 2,000원
  - 급수관구경 40mm이상 : 당초 15,000원 → 변경 4,000원

### 4. 검토의견

#### 가. 법령검토

○ 본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제1항에서 수도요금 및 급수설비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해 위임조레이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의거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위임받은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적법함.

**나. 정책 및 내용검토**

○ 안 35조에서 급수공사의 수수료를 급수관구경 40mm미만 : 당초 10,000원 → 변경 2,000원 , 급수관구경 40mm이상 : 당초 15,000원 → 변경 4,000원으로 각각 인하하는 것으로

▶ 급수공사는 수도급수조례 제9조에 따라 우리시는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타 시군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시 수수료가 비싼 편으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수수료 인하에 따른 감소액은 연간 23,907천원으로 예상됨.

※ 수자원공사 부담 설계비용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재정수입에는 영향이 없음

급수공사 수수료 인하시 주민부담 감소액 2015년 기준					
구분	건수	수수료 비교(원)			비고
		기존	개정	증감	
합계	980	30,045,000	6,138,000	감) 23,907,000	
40mm미만(13-32mm)	937	28,110,000	5,622,000	감) 22,488,000	
40mm이상	43	1,935,000	516,000	감) 1,419,000	

▶ 급수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편임.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현황									
		(단위:천원)							
시군 \ 구경(mm)	13	20	25	32	40	50	100	200	300
양주	120	330	580	1,060	1,790	2,860	10,120	31,300	52,730
경기도 평균	184	450	800	1,539	2,396	4,096	14,974	46,859	75,153

○ 본 개정 조례안은 급수공사 관련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들의 급수공사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시민들의 수돗물 공급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 부담금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수수료 납부기간 연장 등의 추가적인 혜택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 기타검토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형식상 문제점이 없으며,

○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상 문제점은 없음.

## 급수공사 관련 수수료 현황

(단위 : 원)

시군명	설계 수수료		자재검사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비고
	40mm미만	40mm이상	40mm미만	40mm이상	40mm미만	40mm이상	
가평	3,000	6,000	3,000	6,000	3,000	6,000	
고양	설계금액의 1/100		설계금액의 1/100		설계금액의 1/100		하한 4,000원
과천	설계금액의 1/100		설계금액의 1/100		설계금액의 1/100		
광명	설계금액의 1/100		2,000	4,000	2,000	4,000	
광주	설계금액의 1/100		설계금액의 1/100		설계금액의 1/100		
구리	2,000	4,000	2,000	4,000	2,000	4,000	
군포	설계금액의 1/100		-		설계금액의 1/100		하한 40mm미만 2,000원 40mm이상 4,000원
김포	2,000	4,000	2,000	4,000	2,000	4,000	
남양주	2,000	4,000	2,000	4,000	2,000	4,000	
동두천	8,000	9,400	6,200	6,900	7,800	8,800	
부천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성남	설계금액의 1/100		설계금액의 1/100		설계금액의 1/100		
수원	설계금액의 1/100		2,000	4,000	2,000	4,000	
시흥	설계금액의 1/100		설계금액의 1/100		설계금액의 1/100		
안산	설계금액의 1/100		설계금액의 1/100		설계금액의 1/100		
안성	설계금액의 1/100		설계금액의 1/100		설계금액의 1/100		
안양	설계금액의 1/100		2,000	4,000	2,000	4,000	
양주	10,000	15,000	10,000	15,000	10,000	15,000	
양평	3,000	6,000	3,000	6,000	3,000	6,000	
여주	설계금액의 3/100		-		-		
연천	2,000	설계액의 1/100	2,000	4,000	2,000	4,000	
오산	2,000	4,000	2,000	4,000	2,000	4,000	
용인	설계금액의 1/100		4,000	8,000	4,000	8,000	
의왕	19,000		-		21,000		
의정부	2,000	4,000	2,000	4,000	2,000	4,000	
이천	2,000	4,000	2,000	4,000	2,000	4,000	
파주	2,000	4,000	2,000	4,000	2,000	4,000	
평택	2,000	4,000	2,000	4,000	2,000	4,000	
포천	2,000	4,000	2,000	4,000	2,000	4,000	
하남	설계금액의 1/100		2,000	4,000	2,000	4,000	
화성	설계금액의 1/100		6,000	12,000	6,000	12,000	

# 급수공사 관련 구경별 원인자부담금(계량기)

(단위 : 천원)

시군명	계량기 구경별(mm) 분담금액												비 고
	13	20	25	32	40	50	75	100	150	200	250	300	
평균	184	450	800	1,539	2,396	4,096	8,479	14,974	30,609	46,859	66,055	75,153	
양주	120	330	580	1,060	1,790	2,860	5,930	10,120	22,050	31,300	42,260	52,730	
과천	100	250	388	662	978	1,530	3,444	6,126	13,780	24,492	24,492	24,492	↓
광주	130	250	420	800	1,000	1,400	3,800	6,000	10,100	20,000	35,500	35,500	↓
군포	120	280	480	910	1,400	2,400	4,800	8,000	18,000	28,000	30,000	30,000	↓
남양주	110	180	350	450	680	1,320	2,256	4,650	9,000	14,500	14,500	14,500	↓
양평	90	150	300	1,000	1,500	2,000	4,000	8,000	18,000	28,000	40,000	40,000	↓
여주	110	297	528	957	1,617	2,574	5,335	9,108	19,833	28,160	38,126	47,432	↓
연천	100	250	400	800	1,300	2,000	4,000	7,000	17,000	27,000	54,000	54,000	↓
의정부	130	217	325	450	650	1,300	2,620	2,620	2,620	2,620	2,620	2,620	↓
포천	100	178	276	484	770	1,320	2,200	4,092	12,500	23,600	66,500	66,500	↓
이천	120	220	400	580	760	1,400	3,200	5,600	11,600	28,000	50,000	80,000	↓
가평	446	1,604	3,564	6,460	10,914	17,374	36,010	61,477	133,888	190,074	256,600	320,156	↑
고양	280	420	776	1,164	1,552	3,628	6,480	12,052	24,104	40,500	64,782	64,782	↑
광명	172	466	830	1,800	2,541	4,047	8,389	14,296	31,127	44,285	59,785	74,543	↑
구리	354	957	1,702	5,213	8,298	17,200	29,364	63,943	90,789	122,566	152,924	152,924	↑
김포	140	378	672	1,218	2,058	3,276	6,790	11,592	25,242	35,840	48,384	48,384	↑
동두천	204	550	978	1,766	2,996	4,771	9,888	16,882	36,760	52,161	70,425	74,725	↑
성남	386	911	1,426	2,339	3,656	5,713	12,859	22,862	51,446	91,462	142,913	142,913	↑
수원	224	673	1,121	2,019	2,916	4,486	10,095	17,050	37,017	59,003	88,617	88,617	↑
시흥	140	400	640	1,140	1,920	2,940	7,130	12,160	26,480	37,610	50,740	61,190	↑
안양	216	504	864	1,620	2,520	4,320	10,089	14,400	32,400	46,440	62,622	75,528	↑
파주	280	785	1,262	2,243	3,784	5,803	16,119	23,997	52,284	74,262	74,262	74,262	↑
하남	193	385	675	1,349	1,445	2,409	5,621	9,636	21,681	38,544	48,180	48,180	↑
부천	120	225	375	760	1,200	3,000	6,000	11,850	24,000	37,500	49,350	107,436	
평택	150	270	450	750	1,050	2,100	3,000	6,000	15,000	30,000	60,000	75,000	
안산	조례에 명시안함. 연단위로 내부결재.												
안성	조례에 명시안함. 연단위로 내부결재.												
오산	조례에 명시안함. 연단위로 내부결재.												
의왕	조례에 명시안함. 연단위로 내부결재.												
화성	조례에 명시안함. 연단위로 내부결재.												